

2001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용자금 지원

1. 목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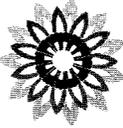
이 결정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용자금의 지원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특별회계용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환경개선특별회계 용자금의 용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결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결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이나 용자업무위탁기관인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또는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하 "용자업무위탁기관"이라 한다)이 공고하는 용자요강에 따른다.

3. 용자사업별 지원규모 및 대상

사 업 명	용 자 대 상	지원규모 (백만원)
1.중소도시지방상수도	개발 지방자치단체	63,720
2.하수처리시설지원	"	6,650
3.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	180,339
4.하수관거정비	지방자치단체	20,000
5.천연가스자동차보급	천연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6,600
6.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1,956
7.재활용산업육성 시설설치자금 기술개발자금 경영안정자금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 재활용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60,000
합 계		359,265



※용자규모는 예산변동사항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4. 금리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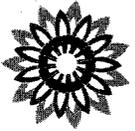
가. 변동금리 적용 :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용자금은 '98년도분 용자금부터 변동금리로 운용하고 환경부장관이 최종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및 이자상환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97년도분까지의 용자금에 대한 발생이자는 연도별로 고시된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나. 금리 적용기간 : 금리 적용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1년을 원칙으로하되, 국가적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재정당국의 조치요구가 있을시는 연도중이라도 금리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5. 용자조건

사 업 명	용 자 조 건		상 환 방 법
	용자(대출)금리	대 출 기 간	
1.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4.75%(4.85%)	5년거치10년상환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균등분할
2.하수처리시설지원	6.0%(6.1%)	5년거치10년상환	"
3.연안지역하수처리장개발	6.0%(6.1%)	5년거치10년상환	"
4.하수관거정비	6.0%(6.1%)	5년거치10년상환	"
5.천연가스자동차보급	-	5년거치10년상환	"
6.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6.0%(6.1%)	3년거치7년상환	"
7.재활용산업육성			
○ 시설설치자금	6.0%(7.0%)	3년거치7년상환	"
○ 기술개발자금		3년거치7년상환	"
○ 경영안정자금		2년거치3년상환	"

※ 대출금리는 용자금리에 용자업무위탁수수료 (용자업무위탁기관 0.1%,금융기관 0.9%)를 가산함.



6. 융자범위

사 업 명	용 자 금 용 도	지 원 비 율
1.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및 농어촌생활 용수 개발지역 이외 지역의 상수도개발사업비	○시지역 50% ○군지역 60% ○가뭄지역 10%가산
2.하수처리시설지원	○낙동강·금호강 유역의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거 설치 사업비	○사업비의 50%
3.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연안지역 및 광주송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광역시 50% ○일반시 70%
4.하수관거정비	○서울시 하수관거 개보수비	○50%
5.천연가스자동차보급	○천연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부지경계 선밖의 배관공사비용,부지매입비등 간접비용은 제외)	○소요자금의 100% 이내(천연가스 버스 50대기준 7억이내)
6.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 설치비	○30%~70%
7.재활용산업육성		
○시설설치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자금	○소요자금의 100% 이내
○기술개발	○기술개발 추진에 필요한 연구용 및 기계 장치, 시제품 제작용 기자재 구입비와 소요운전자금	○소요자금의 100% 이내
○경영안정자금	○재활용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로서 원료구입비,인건비,공공요금에 소요되는 경영안정자금	○소요자금의 100% 이내

7. 융자지원 체계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사업별로 융자업무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융자금을 대여한다.

융자업무위탁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융자금을 지방자치단체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직접 대출하고, 민간사업자 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융자취급은행을 통하여 대출한다. 이 경우 융자업무위탁기관은 동 융자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취급수수료: 대출금리



중 0.9%)하여 융자금 대출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사업별 지원체계

사 업 명	지 원 체 계
1.중소도시지방상수	환경부 → 환경관리공단 → 지자체도개발
2.하수처리시설지원	"
3.연안지역하수처리장 설치	"
4.하수관거정비	"
5.천연가스 공급시설	환경부 → 환경관리공단 → 은행설치 → 사업자
6.농공단지폐수종말처	환경부 → 환경관리공단 → 지자체리시설
7.재활용산업육성	환경부 → 한국자원재생공사 → 은행 → 사업자

8. 융자절차

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절차

1) 융자예산 편성 :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4월30일까지 융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 · 조정하여 전년도 10월15일까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해당 융자금을 자체예산에 반영하여야 한 다.

2) 융자신청 및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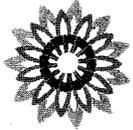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 월별자금 집행계획 및 설계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융자결정내역을 통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결정 통보내용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에게 융자금 대출을 요청한다.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융자금을 대출한다.

3) 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자사업추진실적, 시설착공 · 준공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용자금 집행현황 등을 별도의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용자금지원대상 제한 및 용자결정 취소환경부장관은 용자예산이 편성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용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로부터 2년간 당해 용자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용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용자결정을 취소하고 용자금을 회수하며 회수일부부터 3년간 당해 용자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민간 사업자에 대한 용자절차

1) 용자승인신청

용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용자업무위탁기관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및 서식에 따라 용자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첨부하여 용자업무 위탁기관에 용자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후 용자신청을 할 수 있다.

2) 용자승인

용자업무위탁기관은 용자지원 여부 및 용자 승인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용자업무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용자업무위탁기관은 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용자승인내역을 최초인출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후 5일 이내에 신청자와 용자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용자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시행중 당초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의 사업목적에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자업무위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총소요자금이 30%이상 감액되는 경우에는 용자업무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용자금 대출 및 인출

용자취급금융기관은 용자금 대출시 시설의 설치 또는 제작현장이나 용역제공 등을 확인하고 사업의 진도에 따라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자금의 10%범위내에서 계약금 또는 선금급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자금을 지급할수 있다.

용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승인서에 명시된 최초 인출기간내에 해당 용자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금을 인출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자금은 용자업무위탁기관의 용자요강에서 정한 사



업기간내에,이월자금은이월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한 후 전액 인출하여야 한다.

4) 용자승인취소 및 신청제한

용자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인출기간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거나 용자업무위탁기관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용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이월자금의 경우 이월연도내에 인출하지 못한 대출잔액에 대해서는 용자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용자승인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내에는 용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최초 인출기간 내에 인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신청할 수 있다),용자심사결과 용자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자는 용자업무 위탁기관이 인정할 만한 별도의 보완조치 없이 동일건으로 다시 용자신청을 할 수 없다.

용자금을 용자승인신청서의 사업계획이 아닌타 목적에 유용함으로써 용자승인이 취소되어 용자원리금이 회수된 사업자는 회수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용자업무 위탁기관에 당해사업의 용자신청을 할 수 없다.

5) 사후관리

용자취급금융기관은 용자대상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용자금이 당초 목적이외의 용도로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용자취급금융기관은 용자금이 타목적에 유용된 사실을 발견하였거나 또는 용자업무위탁기관에서 동일한 사유로 회수결정을 통보한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유용된 용자원리금을 용자업무위탁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용자취급금융기관이 유용된 용자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용자금 대출시부터 상환일까지 유용된 용자금에 대하여 당해 용자취급금융기관의 최고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용자업무위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실적보고등

용자업무위탁기관은 사업이 완료된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완료후 2년간 사업결과의 효과 및 애로사항 등을 보고받아 분석·관리하고 필요시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9. 기타

동 용자금지원조건 결정 및 변경 고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기획예산담당관실(전화 504-9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천연가스자동차보급의 용자(대출)금리는 추후 별도 고시한다.